

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- 총 63개 국가 · 지역 -

2023.6.8.(수) 17:00 외교부

국가·지역별 가나다순

- ※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·지역 관할 **우리 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·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**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2022.7.1.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, 리히텐슈타인, 스위스,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디지털증명서(EU DCC)와 동등하게 취급

① 입국금지 조치 : 13개(12*) 국가 · 지역

*13개국 중 12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

구 분		조 치 사 항
유럽	투르크메니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외교 · 공무 · 기업 활동 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- 관광비자는 발급 제한▶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항체 결과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입국 시 공항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실시

◇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: 12개 국가 · 지역

구분	조치사항
나우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- 항공기 탑승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- 나우루 외교부 이민국 담당자(rajeevnauruimmigration@gmail.com)에게 메일로 입국 사전 허가 취득 (입국 사유 및 왕복 항공권 송부) - 나우루 도착후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 - RAT 검사에서 양성 확진될 경우 13일간 정부 격리시설 수용
솔로몬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전 입국 허가 폐지(22.10.12) ○ 모든 외국인의 경우(12세 이하 청소년 제외) 솔로몬제도 입국 4주전 백신 접종 완료해야 하며, 솔로몬제도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세미만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경우는 입국 72시간전 PCR Test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함 ○ 권장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- N95마스크 항상 사용 필수 - 대규모 행사 참석시 코로나19 검사(PCR 또는 자가진단 키트 검사)권장
아시아 태평양 인도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△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2차(얀센은 1차) 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증명서 - 퍼들린둥이 앱 설치(인증여부는 관계 없으며 업로드하고 승인 대기상태면 충분함) △ 격리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차 접종 미완료 접종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며, 건강상 접종을 못한 경우 국립병원(중양의료원, 국립대학 병원, 경찰병원, 지자체 의료원)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며 무격리 ※ 2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코로나 확진 후 완치 판정자: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혹은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를 소지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* 위 사항은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일 뿐, 호텔 등 격리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님 - 2차 접종 완료자 / 3차 접종자: 무격리 *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후에 입국 시 유효 * 2차 접종후 유효기간 없으며 3차는 즉시 입국 가능 *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/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△ (입국후 PCR 검사) 유증상자와 체온이 37.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무증상이고 체온이 37.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△ 인도네시아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(4.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도네시아 전자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(11.9) ○ 22.4.6일부터 자카르타, 수라바야, 메단 등 15개 공항 입국자 도착비자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-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-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,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○ 22.11.9일부터 자카르타, 발리 입국자 전자도착비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국만 2개 공항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기존 도착비자와 동일 * 이민국 웹사이트(molina.imigrasi.go.id)를 통해 신청, 결제 가능 ** 입국 2-14일 전 신청 권장

구분	조치사항
<p>마셜제도</p>	<p>▶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p>
<p>마이크로 네시아</p>	<p>▶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- 코로나19 건강 확인서(Health Clearance Declaration) 양식 제출</p>
<p>키리바시</p>	<p>▶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</p>
<p>투발루</p>	<p>▶입국시 아래 조치사항 적용 -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(1차 추가접종(부스터샷) 포함) 제출</p>
<p>팔라우</p>	<p>▶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(다만, 아래 조건 충족 필요) ※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 ※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(WHO, FDA 승인 제품) 음성 결과 /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※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,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- 다만,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(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)</p>

구분		조치사항
미주	수리남	<p>※ 2022.6.20.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</p> <p>▶ (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접종자) 예외적으로 ①내국인(거주자) ②외교관 ③중증환자의 경우 수리남 외교부(conza@gov.sr)에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.</p> <p>- 황열병 국가 경유(출발)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(도착 10일 이전에 발급) 제출</p> <p>▶ (백신접종완료자*)</p> <p>-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‘코로나 감염 후 회복(6개월 이내) 증명서’ 제출,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, 최소 30일 보장 여행자(코로나)보험</p> <p>- 황열병 국가 경유(출발)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(도착 10일 이전에 발급) 제출</p> <p>* 백신접종완료자: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(교차접종 불인정) 접종자,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, 18세 미만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예외</p>
유럽	아제르바이잔	<p>※ <u>아제르바이잔 일부 지역(아르메니아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</u></p> <p>▶ 2023.5.1.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,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입국 가능</p> <p>△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(18세 이상에 한함)</p> <p>△내각의 특별승인(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)</p> <p>- 우리국민은 2021.10.15.부터 내각의 특별승인 없이 항공 입국 가능하며, 바쿠 공항에서 e-Visa 신청 가능</p> <p>※ 단, △근로허가(work permit), △거주허가(residence permit)보유자 △가족구성원 및 친인척 중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있는 경우 내각의 특별승인 및 백신접종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</p>
아프리카	나이지리아	<p>▶ 2023.1.24.부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의무 제시</p> <p>▶ 백신접종 여부 불문, 사전/사후 PCR 검사 전면 유예</p> <p>▶ 입국허가와 QR 코드 제출은 불요하나, 주재국 포털 사이트에 건강상태 사전등록(https://nitp.ncdc.gov.ng) 권장 / 출발 前, 기내, 입국장에서 작성 가능</p>
중동	이라크	<p><u>이라크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</u></p> <p>※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/코로나19 백신증명서 지참 권고(입국시,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)</p> <p>※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인바,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서 지참 필수</p> <p>▶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쿠르드 지역 입국제한 조치 강화(23.1.15부)</p> <p>- 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</p>

② (시설)격리 조치 : 해당 국가 없음

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: 50개 국가 · 지역

구분	조치 사항
네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.3.1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접종 완료 영문증명서*를 소지할 경우 입국 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시설(자가)격리 불요 *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(교차 접종 인정) / 백신 종류와 회차별 접종일자 기재(부스터샷 접종 불요) ※ 단,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▶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미소지의 경우 출발 72시간내 발급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도착비자 발급, 시설(자가)격리 불요 ※ 5세 이하 PCR 검사 면제
뉴질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입국 전 NZeTA(전자여행허가) 신청 ※ (6.22.~)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※ (9.13.~)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※ (주재국 권고사항) 입국 시 공항에서 제공받은 RAT 키트로 도착 0/1일차 및 5/6일차에 검사 실시하고, 주재국 보건부에 결과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실시 필수 ※ (뉴질랜드 환승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승비자 또는 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, 최대 24시간까지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대기 가능(24시간 초과 시 별도 입국비자 필요) - (6.21.~) 환승객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및 NZTD 등록은 폐지됨. -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(예: 승인(Confirmed) 상태의 환승비자 등)가 없는 경우 뉴질랜드 경유 불가 ▶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입국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, 항공편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항공사 측과 필히 확인 요망
아시아-태평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22.6.27.~) 니우에-뉴질랜드 간 무격리 트래블버블 시행 중이며, 해외 방문객 입국은 뉴질랜드 경유를 통해서만 가능 - 뉴질랜드 및 니우에 두 국가의 입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니우에 입국 가능 ※ 30일 미만 체류 시 별도 비자 불요 단, 뉴질랜드 경유 시 환승용 NZeTA 발급 필수 <p>(입국요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전면 폐지(23.3.30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국 후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, 숙소에서 5일 자가격리 의무 실시 ※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(23.3.30.~) ※ 입국 전 니우에 여행자 신고서(Niue Travellers Declaration Form*) 신청 불요(23.4.3.~) ※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진 판정일로부터 5일간 입국 제한(23.3.30.~) <p>(입국 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입국 후 1일차와 3일차에 Nue Foon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권장(23.3.30.~)

구분	조치사항
대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.9.29.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 허용 ▶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(23.2.7.부터 부터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·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- 자가 또는 친·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(욕실 겸비 필수)이 원칙 - (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)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, 방역차량, 친인척 차량, 자차 모두 이용 가능 - (자발적건강관리기간)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
동티모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기 민항편 운영 중지, 비정기 민항기만 운항(21.5.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외국인 입국 가능(도착비자 제한 없음) ※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면제 (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) ※ 백신미접종자는 10일 자가격리 ※ 백신 미접종자 중 접종 불가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, 의사가 발행한 사유서 제출 필요 ※ 입국전 사전 검역신고서 작성 및 QR코드 발급 (https://adencare.online/PointOfEntry/Register)
몰디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(22.3.1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모든 입-출국자는 백신접종 여부 불문, 몰디브 보건부 온라인 시스템(IMUGA)을 통해 건강진단서를 입-출국 72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몰디브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제출이 불필요 ※ 단,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, 코로나19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. ※ 여행관련 격리 불요
미얀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방역조치(22.10.8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입국 시 구비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백신접종완료자) 백신접종증명서(입국 전 14일 경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백신종류 : 기존 WHO 긴급승인 백신 10개 중 + 노바백스 누백소비드(Nuvaxovid) * 만 12세미만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면제 - (백신접종미완료자) PCR 음성 확인서(48시간 내) - (공통 구비 서류) 미얀마 국영보험 또는 여타 코로나19 관련 보상이 포함된 보험 가입증서(영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미얀마 국영보험 : (www.mminsurace.gov.mm -> General Insurance->Inbound Travel Accident Insurance)에서 가입 가능 ※ 여타 보험 : 주한미얀마대사관 문의를 통해 인정여부 확인 가능 (전화 : 02-790-3814-6, 이메일 : seoul-embassy@mofa.gov.mm)

구분	조치사항
부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 - 입국시 Covid19 관련 RT-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, 입국장 등에서 무작위로 PR-PCR 테스트가 실시 될 수 있음
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.11.15.부터 외국인의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방문 가능 - 기존 발급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.3.15.부 효력 재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전자비자(e-visa)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 ▶ 공항으로 입국하는 2% 인원내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(22.12.24.부) - 양성 확인시 자가 격리 조치 ▶ (주재국 권고사항) 공항 도착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
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3.4.29.부 모든 중국행 탑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 항원 자가진단으로 PCR검사 대체 가능 - (입국 전 검사)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항원 자가진단키트 검사 또는 PCR검사 실시 / 검사 결과 양성 시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 - (세관 신고) 상기 음성 결과를 받은 후 세관 APP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신고서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건강신고서 링크(https://htdecl.chinaport.gov.cn/htdeclweb/home/pages/healthDeclare/declare.html) - (항공사 음성결과 확인) 탑승객 대상 탑승 전 PCR검사 및 항원 자가진단 결과 확인 불요 - (입국 검역) ① 중국 도착 후 세관 건강신고 QR코드 제시 ② 中 세관은 일정 비율 승객에 대한 선별 코로나19 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강신고 이상 혹은 발열 등 유증상 탑승객 대상 세관의 역학조사, 의학 검사 등 진행 ▶ 23.2.6.부 중국-홍콩 / 마카오 간 인적왕래 회복조치 등에 따라 동 지역 간 이동이 아래와 같이 간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중국 → 홍콩 / 마카오)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요 - (홍콩 / 마카오 → 중국) 중국 건강신고서 작성 외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불요하나 아래 경우 필요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) (홍콩) 중국 입국 전 7일 내 해외(중국, 마카오 외)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필요 · 2) (마카오) 해외(중국, 홍콩 외)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, ① 마카오 입경 익일을 1일로 기산하여 7일 이내 중국 이동 시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필요 ② 마카오 입경 익일을 1일로 기산하여 7일 이후 중국 이동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요 ▶ 중국 이민관리국, 23.5.15.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중국 공항만(홍콩, 마카오 포함) 신속통관(자동 출입국 심사) 전면 재개 <p>※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</p> <p>※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.</p>

구 분	조 치 사 항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파키스탄</p>	<p>▶ 2022.9.1.부터 입국시 항공편 탑승전 Pass Track 앱내 개인정보 입력 잠정중단 ※ 단, 입국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혹은 (12세 이상의 미접종자의 경우) 항공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필리핀</p>	<p>□ 백신접종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자(15세 이상) ○ 백신 접종 완료 요건 -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 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(fully vaccinated) 후 14일 경과 (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) ○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-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,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, WHO ICV(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) ※ 출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</p> <p>□ 백신미접종자, 접종 미완료자, 접종완료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(15세 이상) ○ 출국 48시간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negative laboratory-based rapid Antigen Test) 제출 - 제출 불가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시행 * 양성 판정시 필리핀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</p> <p>□ 15세 미만자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여행을 동반하는 성인(부모 등)과 동일한 수칙을 따름</p> <p>□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</p> <p>□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※ 단, 필리핀인 배우자,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</p> <p>□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</p> <p>□ eTravel 등록(기존 One Health Pass 대체) ○ 필리핀 입국자의 출발전 입국 정보,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eTravel (https://etravel.gov.ph) 등록 필요</p> <p>※ 필리핀 일부 지역(잠보앙가 등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주</p>	<p>▶ 2022.6.16.부터 니카라과 입국을 위한 코로나19 RT-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을 폐지하되,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(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)를 제시해야 함.</p> <p>○ 접종 완료 : 백신 2회 접종(동일백신 또는 혼합백신)한 경우. 단, Sputnik Light와 J&J/Janssen 백신의 경우는 1회 접종한 경우</p> <p>○ 인정 백신 : WHO 승인 백신 및 니카라과에 등록된 백신 (Pfizer, Moderna, AstraZeneca, Covishield, Janssen, Sinopharm, Soberana02, Abdala, Sputnik V, Sputnik Light, Coviran)</p> <p>○ 접종 연도 : 상관 없음</p> <p>○ 입국시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카드(종이 등 실물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형태) 제시</p> <p>○ 육상, 해상, 항공 등 니카라과 국경에서 공통 적용되며, 승객 및 승무원 모두 해당</p> <p>▶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RT-PCR 테스트 음성결과서를 입국시 제시해야 함.</p> <p>○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및 성인,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모두 PCR 음성결과서 제시 필요</p> <p>※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‘RT-PCR’ 또는 ‘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’ 표기 필요</p> <p>※ 아시아, 오세아니아, 아프리카 출발지는 입국 96시간 내 시행한 음성결과서 계속 인정</p> <p>※ 항공권 구매 여행사 및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및 입국 관련 상세 안내문 사전 확인 필요</p>

구 분	조 치 사 항
도미니카 공화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(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) ※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
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※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, △경증시 자가격리, △중증시 입원조치 ▶ 멕시코-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
베네수엘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3.1.1.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 ○ <u>백신접종증명서(접종완료) 필요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이, 디지털(QR코드) 또는 다른 유효한 형태 - 입국일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접종 완료 - 접종완료 후 270일이 경과한 경우 추가접종(부스터샷) 필요 ○ <u>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</u> 도착 72시간 이전에 발급된 PCR-RT 음성확인서 필수
볼리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2.4.27.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 ○ <u>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(2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(영문 또는 스페인어) 지참 2.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(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포함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(영문 또는 스페인어) 결과서 지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 입국의 경우,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- 육로, 선박 입국의 경우,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또는 ② 입국 시 코로나19 항원(Antigen) 음성(영문 또는 스페인어) 결과서 지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 입국의 경우, 항공편 출발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 - 육로, 선박 입국의 경우, 볼리비아 도착 전 48시간 이내 항원 검사 실시 3. 기존에 시행되었던 자가격리 의무 및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 보장 여행자 보험증명서 제출 의무 해제
브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공(20.7.29.), 육상(21.12.9.), 해상(2022.4.1.)을 통한 입국 허용 -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 서비스기관에 제시 1.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브라질 위생감시청(ANVISA),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 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 완료(안센 1회, 그 외 백신 2회) 후 14일 경과해야 함. * 브라질 보건당국은 안센 1회 및 그 외 백신 2회 접종을 <u>1차 접종 계획(esquema vacinal primario)</u> 이라고 언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접종 계획에 대한 정의 및 해석 여지를 고려하여 언론 등을 통해 상기 내용 전파 - 참고로 부스터샷, 2가 백신 등이 2차 접종계획(dose de reforco)에 포함 -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, 백신명 또는 제조사, 로트번호, 접종 일자 포함 필요 - 인쇄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시,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2. 음성확인서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-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, 탑승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해서만 유효 3.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12세 미만 아동, 화물운송 근로자, 항공 승무원 -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- 사전 입국 승인없이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(예 : 난민 등) -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4. 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한 RT-PCR 양성 확인서(두 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)와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일자가

구 분	조 치 사 항
	<p>포함된 의사소견서(의사 서명 필요)를 예방접종증명서/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. <p>※상기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, 영어본 중 제시</p>
세인트 루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9.5.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전면 해제 (▲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, ▲백신 접종 불요) - 단, 입국 전 작성한 건강확인서(Health Screening Form)*는 제시 필요 * 정부 홈페이지(stlucia.org/en/covid-19/)에서 다운받아 작성
세인트 키츠네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8.15.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전면 해제 (▲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불요, ▲백신 접종 불요) - 단, 입국 전 온라인 입국 신고서* 작성 필요 * knatravelform.kn 에서 작성
아르헨티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.11.1.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 ※ 한국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가능 - 우리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, 안전한 입국을 위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권고 ※ (비영주 외국인 입국 시 준수 사항) -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(격리, 입원 등)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-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 ※ 22.4.7.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진단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※ 22.8.26.부터 입국 전 입국서약서 제출 규정 폐지
아이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.2.9.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※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
온두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이민청 홈페이지(https://prechequeo.inm.gob.hn) 통해 입국 신청 필요(통상 입국 1-2일 전부터 신청 가능) ※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/신속항원검사) 또는 백신접종증명서(백신 종류 불문, 필수 접종횟수 모두 완료) 제출 필요 * 단순 경유시에도 제출 필요 ※ 황열병 감염 위험 국가에서 출발(경유지 포함)하여 온두라스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필요(예방접종 유효기간 10년) - 중미카리브 : 파나마, 트리니다드토바고 - 남미 :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브라질, 콜롬비아, 에콰도르, 프랑스령 기아나, 가이아나, 페루, 수리남, 베네수엘라, 파라과이 - 아프리카 : 앙골라, 베냉, 부르키나파소, 부룬디, 카메룬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, 콩고, 적도기니, 에티오피아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가봉, 감비아, 가나, 라이베리아, 말리, 모리타니, 기니, 기니비사우, 케냐, 나이지리아, 시에라리온, 세네갈, 소말리아, 수단, 남수단공화국, 탄자니아, 우간다, 니제르, 르완다, 상투메프린시페, 토고
우루과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3.3.1.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1)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(여행자보험 등) 소지 필요 2)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
파라과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만12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* 증명을 제출해야 함. 동 증명서는 스페인어, 영어, 프랑스어, 포르투갈어에 한해 인정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*접종완료 기준 - 3회 접종 (2회 접종, 1회 부스터샷 접종) - 2회 접종 (2회차 접종 완료 6개월 이내) - 1회 완료 백신(접종 3개월 이내) ▶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(접종 미완료자 포함)는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RT-PCR, LAMP, NATT 방식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

구 분		조 치 사 항
유럽	우크라이나	<p>우크라이나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.6.7.부터 △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, △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, △WHO 인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 1가지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동 의무 면제 대상 : 12세 미만 어린이, 영주권자, 駐우크라이나 외교관/가족, 정부 대표단, 난민 등 ▶ 21.8.5.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/미완료 외국인(영주권자 포함)은 입국 후 72시간 이후 10일 자가격리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백신 미접종/미완료 외국인은 “브도마(Vdoma 또는 В д о м а)”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설치 및 실행해야 입국 가능 ※ 입국 후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, 동 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※ 동 자가격리 면제 대상 : 18세 미만 미성년자, 정부대표단, 駐우크라이나 외교관/가족 등 ※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러시아에서 체류하거나 러시아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/미완료 외국인들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(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불가능) ▶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(격리비용 포함)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동 의무면제대상 : 영주권자, 駐우크라이나 외교관/가족, 정부대표단, 난민 등 ▶ 21.12.3.부터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바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(경유 허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 : 임시거주증 소지자, 영주권자,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,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/가족 등 -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
	리비아	<p>리비아는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인바,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서 지참 필수
	모리타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.9.10.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존의 입국 요건(비자 발급 등)에 더해 입국 시 △입국 전 3일 이내(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)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(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), △체온 측정, △건강자가진단서 제출 ※ 공항 도착 시 유증상(발열)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 ※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(영국, 남아공, 브라질, 인도 등)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,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(비용 자부담),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,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 ※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
	알제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.3.20.부터 백신접종증명서* 제출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*WHO 긴급승인 백신(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, 화이자, 안센, 시노백, 노바백스, 시노팜(베이징), 코비실드, 코백신) 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9개월 이내 접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※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자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
중동	이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(2회) 제출(13세 이상) 또는 PCR 음성확인서(출발 72시간 이내 실시) 지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신 접종 완료(fully vaccinated) 후 최소 14일 경과(백신 종류 무관) ※ 이란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PCR 검사, 격리 실시(검사 및 격리 비용 자부담) ※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 ※ 디지털 접종증명서에는 QR코드 포함 필요 ※ 2021.10.27.부터 관광비자 발급 재개(단, 여행사를 통한 발급 권장)

구 분		조 치 사 항
	팔레스타인	<p>이스라엘 입국절차와 동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백신접종여부 무관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※ COVID-19를 포함하고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증서 필수 제출
아프리카	남수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발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※ 단,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,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(관광, 친지 방문 등)에 부합하는 초청장 등을 제시 필요
	니제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(20.8.1.) ※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(검체채취일 기준)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UEMOA 가입국발 승객들에 한해, 5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허용 - 유증상자는 신속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PCR 검사 실시 ※ 니제르 거주자는 7일간 자가격리 실시(21.8.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△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, △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, △격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격리 종료 ※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일 이상 체류 시 7일째 정부지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
	모리셔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22.7.1.부터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▷ 출발 전 입국정보와 건강상태 입력 및 QR 코드 수령하여 입국 시 제시 * (https://safemauritius.govmu.org)
	민주콩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.8.15.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※ 입출국시 △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하며, △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, 검역문진표 작성 ※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추가 PCR 음성확인서 전면폐지, 미접종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부담으로 PCR 검사 실시
	보츠와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코로나19 관련 입국허가 요건 (22.3.18) ※ (접종완료자)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필요,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, ※ (접종미완료자)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, 입국 시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※ 코로나 양성 판정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14일간의 격리 필요 <p>*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(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, 얀센 등)의 완전한 접종(화이자/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, 얀센 1차 접종 완료) 및 부스터샷 접종 불필요</p>
	부르키나 파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(20.8.1.) ※ △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, 입국일로부터 8일째,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권고, △코로나19 유증상자(체온 38도 이상)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(90,000CFA비용 자부담) ※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

구 분	조 치 사 항
상투메 프린시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.7.16.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(항공 및 선박) 허가 ※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,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
세이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.12.1부터 코로나19 관련 입국요건 해제 ※ 단, 입국 시 세이셸 여행허가증(Travel Authorization) 온라인 신청(seychells.govtas.com) 후 입국 가능 - 신청 시 △항공권 예약 확인증, △숙박 예약 확인증, △건강보험 등 필요
시에라리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입국 전) 출발 전 시에라리온 여행 포털(www.travel.gov.sl) 에 입국정보 등록 필수 * 시에라리온 여행포털(www.travel.gov.sl)에서 입국정보 입력 후 여행허가서류 (Traveler 's Authorization) 홈페이지에서 발급 *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전, 도착 후 PCR 검사 불필요(12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출발 14일전 접종 권장) ▶ (입국 후) 백신 미접종자, 부분 접종자에 한해 도착 후 공항 내 PCR 검사 필수
앙골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앙골라 입국시,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(영문/포르투갈어)를 제출하거나 항공편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RT-PCR검사결과(음성확인서) 제출 의무 ▶ 앙골라 출국시,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증명서(영문/포르투갈어) 제출 의무 ※ 12세 미만은 입출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, RT-PCR 검사 결과 제출 대상에서 제외
에리트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든 승객은 입국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※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에서 모든 승객들에 대한 PCR 검사 실시 -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 실시
중앙 아프리카 공화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3일(72시간)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영문) 제출 ※ 입국 시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체온 검사, 개인소지품 소독,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
지부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.9.15부터 출입국 관리 조치 변경(대통령령) ※ (지부티 입국 시) 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소지자 :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됨. 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미소지자 : 출발일 기준 3일(72시간)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* PCR 음성확인서가 없을 시, 지부티 공항 내 검사소에서 PCR 검사 필요 (검사비 : 30 USD) ※ (지부티 출국 시) 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소지자 : 출국 가능 - 백신 접종(2차 접종) 증명서 미소지자 : 행선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입국 규정에 따라 △PCR 음성확인서 요구 시,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, △요구사항이 없을 시,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출국 가능
차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도착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영문) 제출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, 마스크 착용 필수 - 상기 서류 미제출시 벌금(40,000세파=약70USD) 부과

구분	조치사항
카메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육로를 통한 입국 불가(아운데, 두알라 공항을 통한 입국 가능) ※ 카메룬 입국 관련 코로나19 제한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메룬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할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 불요. 단,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도착기준 3일(72시간)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(22.10.4부터) - 아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,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 시설 격리(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, 격리 비용 자부담) ※ (카메룬 출국시 조치) 출국자의 최종도착지 요구서류(PCR음성결과지등) 카메룬 공항에서 제시필요(22.4.7부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메룬 내 PCR 1회 비용 : 30,000XAF(약 50USD) ※ 카메룬 입국시 시증 필요(코로나19 상황下 도착 시증 발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)
케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.8.1.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※ 케냐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 및 여행객은 별도로 격리는 없으나, 케냐 입국 단계에서 코로나19 ‘백신접종증명서’ 또는 출발 72시간 이내 시행한 ‘PCR 음성확인서’ 중 하나를 필히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신은 접종 필요 횟수(2회, 안센은 1회)를 모두 맞아야 하며, 2차 접종일(안센은 1차 접종일)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 케냐에 도착해야 함. - 백신접종증명서는 www.globalhaven.org 사이트에 업로드(Begin Validation →Sign in→Upload Vaccine record→Report Vaccination 메뉴 이용)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 - PCR 음성확인서는 www.globalhaven.org 사이트에 업로드(Begin Validation →Sign in→Validate Test for Travel 메뉴 이용 / 한국에서 진행한 PCR 검사는 at any other lab에 해당)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 ※ 만 12세 미만 여행객은 제출 의무 면제 ※ 모든 여행객 중에서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(https://ears.health.go.ke/airline_registration)에 접속, Register for a new travel을 작성한 후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(핸드폰 저장 사진 또는 출력물)하고, 신속항원검사를 자비(미화 30불)로 받아야하며, 양성이 나올 경우 자가 격리 및 추가비용(미화 50불) 지불하고 추가 PCR 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 ※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-visa만 가능(21.1.1.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www.evisa.go.ke를 통해 발급 필요
코모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불요. 단,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, 72시간 안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요 * 백신접종 완료자: 2차 접종 완료자, 안센 등 1회만 요구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인정) *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▷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격리 없음
콩고 공화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(육로 및 해로를 통한 국경 통과 금지) ▶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제시 필요 ※ Health and Immigration declaration Form 작성 필요

구분	조치사항
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-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(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(https://voyage.gouv.tg/checkphone) 작성 (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-19 PCR 검사 신청,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) 완료 필요 ※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-19 PCR 검사 의무 실시,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(30일간)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(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)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 ※ 21.11.29.부터 남아공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 ▶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입국)입국전 5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, △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(http://www.voyage.gouv.tg)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제, △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, △코로나 검사 실시,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 ※ (출국) 출국전 5일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▶ 5월 17일부로 육·해상 국경 개방 ▶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

※ 사증 발급 중단, 자가격리(권고 포함), 도착 시 발열검사·검역 신고서 징구 등

- ※ **EU 회원국(27개)** :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몰타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크로아티아 (밀줄 국가는 비셴겐협약 가입국)
- ※ **셴겐협약 가입국(27개)**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몰타, 벨기에, 스위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크로아티아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(밀줄 국가는 비EU 회원국)

▣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: 128개 국가 · 지역

※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·지역 관할 우리 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·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,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조치 해제 국가·지역(해제 시기)
미주(20)	코스타리카 ^① , 자메이카 ^② , 쿠바 ^③ , 그레나다 ^④ , 트리니다드토바고 ^⑤ , 과테말라 ^⑥ , 파나마 ^⑦ , 캐나다 ^⑧ , 가이아나 ^⑨ , 에콰도르 ^⑩ 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^⑪ , 바베이도스 ^⑫ , 페루 ^⑬ , 안티가바부다 ^⑭ , 엘살바도르 ^⑮ , 벨리즈 ^⑯ , 칠레 ^⑰ , 미국 ^⑱ , 바하마 ^⑲ , 콜롬비아 ^⑳
중동(12)	바레인 ^① , 요르단 ^② , 사우디아라비아 ^③ , 쿠웨이트 ^④ , 오만 ^⑤ , 이집트 ^⑥ , 레바논 ^⑦ , 모로코 ^⑧ , 아랍에미리트 ^⑨ , 튀니지 ^⑩ , 카타르 ^⑪ , 이스라엘 ^⑫
유럽(48)	노르웨이 ^① , 슬로베니아 ^② , 아이슬란드 ^③ , 헝가리 ^④ , 아일랜드 ^⑤ , 루마니아 ^⑥ , 영국 ^⑦ , 폴란드 ^⑧ , 스웨덴 ^⑨ , 덴마크 ^⑩ , 라트비아 ^⑪ , 스위스 ^⑫ , 슬로바키아 ^⑬ , 몬테네그로 ^⑭ , 체코 ^⑮ , 불가리아 ^⑯ , 키르기스스탄 ^⑰ , 그리스 ^⑱ , 크로아티아 ^⑲ , 아르메니아 ^㉑ , 알바니아 ^㉒ , 세르비아 ^㉓ , 벨기에 ^㉔ , 사이프러스 ^㉕ 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^㉖ , 벨라루스 ^㉗ , 이탈리아 ^㉘ , 독일 ^㉙ , 튀르키예 ^㉚ , 카자흐스탄 ^㉛ , 우즈베키스탄 ^㉜ , 에스토니아 ^㉝ , 조지아 ^㉞ , 핀란드 ^㉟ , 포르투갈 ^㊱ , 프랑스 ^㊲ , 네덜란드 ^㊳ , 룩셈부르크 ^㊴ , 러시아 ^㊵ , 스페인 ^㊶ , 몰타 ^㊷ , 몰도바 ^㊸ , 북마케도니아 ^㊹ , 모나코 ^㊺ , 리투아니아 ^㊻ , 리히텐슈타인 ^㊼ , 타지키스탄 ^㊽ , 오스트리아 ^㊾
아 · 태(21)	몽골 ^① , 호주 ^② , 말레이시아 ^③ , 브루나이 ^④ , 쿡 제도 ^⑤ , 사모아 ^⑥ , 태국 ^⑦ , 바누아투 ^⑧ , 파푸아뉴기니 ^⑨ , 캄보디아 ^⑩ , 라오스 ^⑪ , 스리랑카 ^⑫ , 베트남 ^⑬ , 아프가니스탄 ^⑭ , 싱가포르 ^⑮ , 피지 ^⑯ , 홍콩 ^⑰ , 마카오 ^⑱ , 통가 ^⑲ , 일본 ^㉑ , 방글라데시 ^㉒
아프리카(27)	가봉 ^① , 남아공 ^② , 베냉 ^③ , 르완다 ^④ , 수단 ^⑤ , 마다가스카르 ^⑥ , 나미비아 ^⑦ , 카보베르데 ^⑧ , 에스와티니 ^⑨ , 세네갈 ^⑩ , 에티오피아 ^⑪ , 감비아 ^⑫ , 부룬디 ^⑬ , 탄자니아 ^⑭ , 잠비아 ^⑮ , 적도기니 ^⑯ , 우간다 ^⑰ , 모잠비크 ^⑱ , 코트디부아르 ^㉑ , 짐바브웨 ^㉒ , 케냐 ^㉓ , 기니 ^㉔ , 말리 ^㉕ , 기니비사우 ^㉖ , 라이베리아 ^㉗ , 가나 ^㉘ , 말라위 ^㉙

① 바레인

▶ 22.2.20.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

② 요르단

▶ 22.3.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,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(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)

※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<https://www.gateway2jordan.gov.jo>

③ 사우디아라비아

▶ 22.3.5.부터 입국제한 조치(음성확인서, 입국 이후 PCR 검사 등)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폐지, 입국 후 자가 격리 의무 없음. (다만,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)

④ 노르웨이

▶ 22.2.12.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(사전등록, 음성확인서 제출, 입경지점 검사, 격리 의무) 모두 폐지

⑤ 슬로베니아

▶ 22.2.19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입국 후 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

※ 다만,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.

⑥ 아이슬란드

▶ 22.2.25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⑦ 헝가리

▶ 22.3.7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⑧ 아일랜드

▶ 22.3.7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⑨ 루마니아

▶ 22.3.7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⑩ 영국

▶ 22.3.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.

⑪ 몽골

▶ 22.3.14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⑫ 폴란드

▶ 22.3.28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⑬ 가봉

▶ 22.3.28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⑭ 덴마크

▶ 22.3.29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⑮ 스웨덴

▶ 22.4.1.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회복증명서, 음성확인서 등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⑯ 라트비아

▶ 22.4.1.(금)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

-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(고위험 국가 제외)

-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(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) 제출 필수(단, 12세 미만 어린이,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, 24시간 내 경유자,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)

⑰ 스위스

▶ 22.4.1.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

⑱ 슬로바키아

▶ 22.4.6.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

⑲ 코스타리카

▶ 22.4.1.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

⑳ 몬테네그로

▶ 22.4.9.부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

㉑ 체코

▶ 22.4.9.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

▶ 23.1.31.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해제

㉒ 자메이카

▶ 2022.4.15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㉓ 불가리아

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㉔ 키르기즈

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㉕ 쿠웨이트

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㉖ 그리스

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㉗ 크로아티아

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㉘ 아르메니아

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※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(아제르바이잔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

㉙ 알바니아

▶ 2022.5.1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㉚ 세르비아

▶ 2022.5.3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㉓ 쿠바

▶ 2022.4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.

㉔ 오만

▶ 2022.5.23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㉕ 벨기에

▶ 2022.5.24.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

㉖ 사이프러스

▶ 2022.6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

▶ 2022.5.2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㉘ 벨라루스

▶ 2022.5.2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※ 벨라루스 일부 지역(우크라이나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

㉙ 이탈리아

▶ 2022.6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㉚ 그레나다

▶ 2022.4.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㉛ 독일

▶ 2022.6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, 단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

㉜ 튀르키예

▶ 2022.6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㉝ 카자흐스탄

▶ 2022.6.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㉞ 우즈베키스탄

▶ 2022.6.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㉟ 에스토니아

▶ 2022.6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㊱ 이집트

▶ 2022.6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㊲ 조지아

▶ 2022.6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㊳ 트리니다드토바고

▶ 2022.7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㊴ 핀란드

▶ 2022.7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㊵ 남아공

▶ 2022.6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㊶ 포르투갈

▶ 2022.7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㊷ 호주

▶ 2022.7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㊸ 베냉

▶ 2022.7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㊹ 프랑스

▶ 2022.8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㉓ 르완다

▶ 2022.7.2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㉔ 수단

▶ 2022.8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㉕ 말레이시아

▶ 2022.8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2.12.30.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(체온) 검사 실시,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(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)

㉖ 마다가스카르

▶ 2022.8.1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㉗ 과테말라

▶ 2022.8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㉘ 나미비아

▶ 2022.8.2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㉙ 브루나이

▶ 2022.9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㉚ 파나마

▶ 2022.9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㉛ 카보베르데

▶ 2022.9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㉜ 쿡 제도

▶ 2022.9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※ 입국 후 코로나 확진 시 숙소에서 7일 자가격리 필수

㉝ 사모아

▶ 2022.9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㉞ 레바논

▶ 2022.9.2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㉟ 캐나다

▶ 2022.10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㊱ 모로코

▶ 2022.10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3.1.3.부터 국적불문 중국발 모로코 입국 금지(중국에서 출국한 지 7일 경과했을 경우 모로코 입국 가능)

㊲ 태국

▶ 2022.9.3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㊳ 바누아투

▶ 2022.9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㊴ 파푸아뉴기니

▶ 2022.10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㊵ 네덜란드

▶ 2022.9.1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㊶ 룩셈부르크

▶ 2022.10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㊷ 캄보디아

▶ 2022.10.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㊸ 가이아나

▶ 2022.10.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3.1.8.부터 중국, 홍콩, 마카오발 모든 입국자(2세 이상)는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(또는 항원검사)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

※ 출발 10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된 자는 코로나 회복증명서로 대체 가능

⑦4 에콰도르

▶ 2022.10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⑦5 러시아

▶ 2022.10.2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※ 러시아 일부 지역(우크라이나 접경지)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

⑦6 스페인

▶ 2022.10.21.부터 한국발 스페인 입국자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2.12.1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⑦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

▶ 2022.9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⑦8 바베이도스

▶ 2022.9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⑦9 몰타

▶ 2022.7.2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▶ 2023.1.9.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항원검사(입국전 48시간 이내 실시)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※ 만 11세 미만 아동은 위 사항 적용 제외

⑧0 몰도바

▶ 2022.4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1 페루

▶ 2022.10.2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2 북마케도니아

▶ 2022.4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3 모나코

▶ 2022.8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4 앤티가바부다

▶ 2022.8.2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5 에스와티니

▶ 2022.11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6 아랍에미리트

▶ 2022.11.1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7 세네갈

▶ 2022.11.1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8 에티오피아

▶ 2022.10.2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⑧9 튀니지

▶ 2022.12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0 감비아

▶ 2022.12.1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1 라오스

▶ 2022.12.2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2 스리랑카

▶ 2022.12.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※ 다만, 일부 항공사 및 경유 국가 이용 시 PCR 결과지를 요구 할 수 있음.

※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또는 관광객은 병원/호텔/거주지에서 7일간 격리

⑨3 부룬디

▶ 2023.1.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4 리투아니아

▶ 2022.5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5 엘살바도르

▶ 2021.11.1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6 리히텐슈타인

▶ 2022.5.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7 베트남

▶ 2022.5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⑨8 아프가니스탄

▶ 2022.5.1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※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입니다.

⑨9 탄자니아

▶ 2023.1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⑩0 싱가포르

▶ 2023.2.1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⑩1 타지키스탄

▶ 2023.2.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⑩2 피지

▶ 2023.2.1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⑩3 오스트리아

▶ 2022.5.16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⑩4 잠비아

▶ 2023.3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

⑩5 적도기니

▶ 2023.3.2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⑩6 우간다

▶ 2023.3.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⑩7 홍콩

▶ 2023.4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⑩8 마카오

▶ 2023.4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⑩9 모잠비크

▶ 2023.4.14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0 통가

▶ 2023.3.3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1 벨리즈

▶ 2023.4.18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2 코트디부아르

▶ 2023.4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3 일본

▶ 2023.4.2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4 칠레

▶ 2023.5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5 짐바브웨

▶ 2023.5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6 케냐

▶ 2023.5.9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7 미국

▶ 2023.5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8 기니

▶ 2023.5.3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⑪9 말리

▶ 2023.3.2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⑫0 기니비사우

▶ 2023.5.12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⑫1 라이베리아

▶ 2023.5.17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⑫ 가나

▶ 2023.5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⑬ 바하마

▶ 2022.9.20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⑭ 방글라데시

▶ 2023.5.2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⑮ 콜롬비아

▶ 2023.4.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⑯ 카타르

▶ 2023.4.1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

⑰ 이스라엘

▶ 2023.5.15.부터 코로나19 관련 서류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, 여행자 보험증서) 제시 불요.

⑱ 말라위

▶ 2023.6.5.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(백신접종 증명서, PCR 음성확인서) 제시 불요. 끝.